

이사회 규정

2023.09.14

엘에스머트리얼즈(주)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엘에스머트리얼즈(주)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본 규정 제 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법령,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1. 이사의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 8 조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소집절차)

1. 이사회 소집의 통지는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결의 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부의사항)

1. 이사회 결정 사항 :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1)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재무제표의 승인
- 라.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 마. 공동대표의 결정
- 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사.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아.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실권 주 발행
- 자.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차. 사채의 모집
- 카.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및 양도성의 결정
- 파. 준비금의 자본전입
- 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가. 이사의 겸업 승인

나.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다.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라. 이사회 규정 내에 정하는 사내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주주총회운영규정
- 내부회계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지침
- 이사회규정
- 내부정보관리규정
- 위임전결규정
- 이해관계자거래규정
- 인장관리규정
- 접대비 관리규정
- 임직원 대여금 관리규정
- 임원보수 및 상여금 관리규정
- 임원 퇴직금 규정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가.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나.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중간배당 포함)

다. 자본감소

라. 정관 변경안

마. 이사의 선임·해임안, 보수안

바.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재평가

나. 중요한 대규모 투자(연간 금 30억원 이상의 생산설비 등의 투자에 관한 사항)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등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라. 기타 자본금 또는 준비금(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신주 발행, 유상감자, 주식연계사채 발행, Stock Option 부여, 상법 제 460조의 준비금의 결손보전, 상법 제 461조의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등 포함)

마. 기타 거래금액이 금 30억원 이상으로서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 체결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연간 거래금액이 금 10억원 이상인 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바. 경제적 이해관계가 금 30억원 이상인 소송에 관한 사항

사.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

아. 회계처리기준과 관행의 변경

자. 대상회사의 임직원, 주주, 계열사, 기타 특수관계인(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4)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가. 전략적 사업방향

나.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다. 기존사업의 폐지 또는 신규사업의 개시

라. 타인에 대한 자금 대여,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지원 행위(다만, 대상회사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대여금은 제외)

마.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및 기타 타회사에 대한 주식인수 등을 통한 투자행위

사. 자회사 주식 또는 대상회사가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매각

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인사관계사항

가. 비등기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6)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3 조1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1. 이사회는 이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본점에 보관한다.
4.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는 제34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 (사무국)

사무국은 지원팀으로 하며,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비등기임원

제 17 조 (비등기임원)

1.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경영회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비등기임원들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